주택 특별공급 신청서

1. 신청인 인적시항 및 소속업체 현황

성 명						루번호 또는 소신고번호		-	
주소							인천	!광역시 전입일 :	
연락처	자택 : ()	_			휴대폰 :	_	_	
업체명					사업지	등록번호			
근무부서					직책	및 직위			
소재지 주소							1		
경제자유구역 근무기간	년	월	일 (부터) ~	년	월	일 (까지),	•	년	월

2. 가족사항 (본인,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)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	부양가족 해당여부

[※] 기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함.

3.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

구역 및 지구	신청주택형	비고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자구 11공구 RC3BL	□ 084.0352A	□ 분양
	□ 084.0236B	□ 분양
	□ 084.0158C	□ 분양
	□ 084.0044D	□ 분양

(※한 가지의 주택형만 "V"표시)

4. 첨부서류

공통서류	확인	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확인				
1.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(원본대조 필)] 1. 신분증 (사본)				
2. 사업자등록증 (원본대조 필)		2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재외동포) 2.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(재외동포)				
3. 법인인감증명서 (법인신청의 경우)		3. 인감도장 (날인용)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)				
4.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신청의 경우)		4. 주민등록표등본 (본인) (※ 발급 시 안내문 참조)				
5. 재직증명서 (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)		5.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) (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)				
6. 인사기록카드 (원본대조 필)		6. 주민등록표초본 (본인) (※ 발급 시 안내문 참조)				
7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)		7. 가족관계증명서				
8.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(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)		8. 동점지발생 시 부양기족 산정을 위한 추가서류 (※ 발급 시 안내문 참조)				
9. 무주택서약서 (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)						
10.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한두류동산원→청부동장기입시역→인배 이용시간 09:00 ~·17:30)						
11.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※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						
※ 확인란 "□" 킨에 "V"로 표시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」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 합니다.						
		년 월 [※ 접수일은 서류 접수기간으로만 작성 가능합니				
세대주와의 관기	# :_	신 청 인 : 신청인 본인 성명 (인감 날인)				
위 신청인은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						

위 신청인은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소 속 업 체 : 소속업체명 (소속업체 날인)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

무주택 서약서

신청아파트	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					
성 명		신청주택형				
주민등록번호		연락처				

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(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.)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 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,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(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) 및 동·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서 약 내 용	확 인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<mark>[2025.12.05.(금) 예정]</mark>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. ※ '2018.12.11. 이후 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. ※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(특별공급 안내문 참조)	(신청인 인감날인)
-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	(신청인 인감날인)

년 월 일

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본인 신청 시 신청인 : 신청자 본인 성명 (신청인 인감날인)

대리 신청 시 신청인 : 대리인 성명 (대리인 인감날인)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